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8758호, 2022. 1. 18. 공포 ·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 피난안내의 방법,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장의 등록 변경 사유 구체화 및 등록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 검사등의 범위 등 구체화(안 제6조)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방법 규정(안 제6조의4)

공연장 중대사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 의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의 피난안내의 방법을 정함(안 별표 1)

공연장외의 공연장소에서도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되 외부로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 구체화(안제6조의14)

마.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 등록정보와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안 제16조의15)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를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의”로 하고, 제6호나목을 “변경등록 : 변경된 구동식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제2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의 변경
2. 공연장 명칭의 변경
3. 무대기계·기구의 변경
4. 객석수의 변경
5. 무대면적 또는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의 변경

제6조의3의 “제11조의5제2항”을 “제11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4를 제6조의5로 하고, 제1항제3호의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중대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 상황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후 조치내용
5. 향후 조치계획

제6조의5를 제6조의6으로 하고, 제6조의6을 제6조의7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제6조의7”을 “제6조의8”로 하고, 제6조의7을 제6조의8로 하고, 제6조의8을 제6조의9로 한다.

제6조의14와 제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4(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2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15(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의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제1호가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이하 “공연장소”라 한다)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공연장
- 2) 영 제9조의5에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소

별표1제1호나목의 “부분으로서”를 “또는 공연장소의 출입통로 부분으로서”로 “관람객이”를 “관람자가”로 하고, 다목 2)의 “실(室)”을 “실(室)이나 구역”으로 하고, 라목 1)의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를 “공연장 또는 공연장소의 면적이나 공연장 또는 공연장소가”로 하고, 마목의 “관람객이”를 “관람자가”로, “공연장의”를 “공연장 또는 공연장소의”로 한다.

별표1제2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난안내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공연장

2) 영 제9조의5에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소

별표 1 제2호 나목 1)의 “공연장의”를 “공연장 또는 공연장소의”로, “관람객”을 “관람자”로 하고, 2)의 “관람객이”를 “관람자가”로 “공연장”을 “공연장 또는 공연장소에”로 하고, 다목 2)의 “실(室)”을 “실(室)이나 구역”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의1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6제1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의6제1항 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6제1항 제3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의6제1항 제4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지제10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변경된 구동식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u>등록증의 기재사항의</u>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 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등) ① - ----- ----- <u>제6항에서 정한 사</u> <u>항의</u>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략) 가. (생략)	6.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변경등록: 법 제12조 제2항 <u>및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u> <u>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u> <u>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u> <u>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u> <u>공연장만 해당한다)</u>	나. -----: <u>변경된 구동식</u> <u>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u> <u>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u> <u>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u> <u>적용한 안전진단 결과</u>

② ~ ⑤ (생략)

<신설>

제6조의3(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조제2항의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의 변경
2. 공연장 명칭의 변경
3. 무대기계·기구의 변경
4. 객석수의 변경
5. 무대면적 또는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의 변경

제6조의3(피난안내 대상 등) ---
-----제3항-----

-----.

제6조의4(중대사고의 보고) 공연장
운영자 등은 법 제11조의6제1항
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u>2. 사상자 등 피해 상황</u> <u>3. 사고 발생 경위</u> <u>4. 사고 후 조치내용</u> <u>5. 향후 조치계획</u>
<u>제6조의4(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략)</u> 1. ~ 2. (생략) 3. 영 <u>별표 1</u> 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③ (생략)	<u>제6조의5(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u> 1. ~ 2. (현행과 같음) 3. -- <u>별표 1의3</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6조의5(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생략)</u>	<u>제6조의6(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현행과 같음)</u>
<u>제6조의6(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생략)</u> 1. (생략) 2. <u>제6조의7제2항</u> 에 따른 실무경력인정서 3. (생략)	<u>제6조의7(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현행과 같음)</u> 1. (현행과 같음) 2. <u>제6조의8</u> ----- -----. 3. (현행과 같음)
<u>제6조의7(실무경력의 인정) (생략)</u>	<u>제6조의8(실무경력의 인정) (현행 제6조의7과 같음)</u>
<u>제6조의8(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생략)</u> <u><신설></u>	<u>제6조의9(자격증의 교부·재교부) (현행 제6조의8과 같음)</u> <u>제6조의14(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6제2항</u>

<신 설>

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15(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2조의7 제1항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의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u>안전검사 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u>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36